

## 스페인 特許法 一部 改正 化學物質·의약등 92년까지 不特許

스페인은 최근 特許法의 一部를 改正했다.

그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特許의 존속기간은 出願日로부터 20年(가보호제도 채택)

▲수입 特許制度 폐지

▲職務發明規定 채택

▲신규성·진보성·유용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명시

▲發見·과학적 이론·수학적 방법·컴퓨터 소프트웨어는 發明에서 제외

▲식물 취득의 보호에 관한 法律로 규제된 동식물품 및 동식물을 얻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에는 特許 不認定

▲微生物學的 방법 및 그에 의한 산물은 特許의 대상이 되지 않, 산물은 1992년 1월 7일까지 不特許

▲化學物質 및 의약은 1992년 10월 6일까지 不特許, 製造 特許만 인정

▲新法 발효후 3년이후에 出願된 發明에 대해서는 出願人은 신규성조사 청구 의무화

▲신규성조사 보고중에 신규성 審査 수행

▲부분무효제도 채택

▲特許公告후 3년이내 또는 出願日로부터 4년이내 실시의 무제도 채택

▲特許의 不實施 또는 불충

분 실시의 경우 강제실시규정 채택

▲實用新案의 존속기간은 出願日로부터 10년

▲實用新案은 신규성만이 요구되며 권리보호는 特許와 同一

## 인도네시아 特許法案 마련

### 美國요구에 따라 特許·著作權 중심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美國의 강한 요구에 따라 特許와 著作權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法案策定에 착수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特別委員會는 法案을 마련, 가까운 시일내에 國會에 提出할 것으로 보인다.

## 美 關稅法 제337조 폐기

### 내년초 다시 上程될지는 豫想못해

美國上院은 特許權 등 知的所有權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美國 관세법 제337조 改正法案을 폐기시켰다.

이 改正法案은 美國 정부가 국내산업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써 美下院에서 可決되어 上院에서의 審議가 주목되어 왔다.

그런데 이 法案이 내년초에

다시 美議會에 상정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다.

### 日, 特許廳 特許法 一部 改正

日本特許廳은 하이테크 개발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歐美와 같은 多項出願制度를 도입, 다음 정기국회에 提出할 예정이다. <8>

工業所有權 研修는

先進企業의 根幹!